

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2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시 주요시책인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3인의 공동 위원장으로 하되,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함 (안 제3조).
- 나.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.
- 다.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).

제정조례안 : 별첨

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연 32,760천원

- 위원회 수당 : 70,000원 * 52명 * 9회 = 32,760천원
(2004년도 : 70,000원 * 52명 * 6회 = 21,840천원)

사전(입법) 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4.2. ~ 4.22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단원김홍도문화관광콘텐츠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계획
(방침결정)

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관광” 이라 함은 예술성·여가성·대중성 및 오락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.
2. “문화관광 콘텐츠” 라 함은 문화관광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를 말한다.

제3조 (위원회) ①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3인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2명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부시장,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또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문화관광 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
2.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
3. 기타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동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6조 (분과위원회) 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8조 (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 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관광통상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관광통상과장 이 영 빈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관광기획담당 박 혁 택
	담당자 성명·전화	채 충 렐 (행정 3060)

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22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6. 22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와 문화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·사회단체,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토록 하고 특히 문화관광콘텐츠사업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공개모집 하도록 수정함.

2. 주 요 골 자

- 위원은 부시장,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시의원, 문화예술·관광 및 학계, 공공기관, 언론, 종교 및 경제계, 시민·사회단체, 기타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을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이중 일반주민은 3명이상이 포함되도록 수정함. (안 제3조 제4항)

- 일반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
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(안 제3조 6항)
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(제11조)

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위원은 부시장,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민은 3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의원
2. 문화예술·관광 및 학계
3. 공공기관
4. 언론, 종교 및 경제계
5. 시민·사회단체
6. 기타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

⑥시장은 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위원회) ① ~ ③(생략)	제3조(위원회) ① ~ ③(원안과 같음))
<p><u>④위원은 부시장,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또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	<p><u>④위원은 부시장,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 <u>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민은 3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시의원</u> <u>2. 문화예술·관광 및 학계</u> <u>3. 공공기관</u> <u>4. 언론, 종교 및 경제계</u> <u>5. 시민·사회단체</u> <u>6. 기타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</u>
⑤(생략)	⑤(원안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<p><u>⑥시장은 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
<u>〈신설〉</u>	<p><u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